

# 주요 비시장경제 국가(NME)의 GATT/WTO 가입 사례와 다자통상체제의 한계 및 시사점

서울대학교 국제통상전략센터 연구원·국립외교원 부교수 왕일·이효영

\*논문접수 : 2025. 1. 20. \*심사개시 : 2025. 1. 21. \*게재확정 : 2025. 2. 11.

## 〈목 차〉

- |                                      |                                       |
|--------------------------------------|---------------------------------------|
| I. 서론                                | IV. 다자통상체제 속에서의 비시장경제(NME) 체제의 구조적 쟁점 |
| II. 비시장경제(NME) 국가의 GATT 가입           | 1. 비시장경제 지위 관련 쟁점                     |
| 1. GATT 원체약국                         | 2. 반덤핑 관련 쟁점                          |
| 2. GATT 신규 가입국                       | 3. 보조금 관련 쟁점                          |
| 3. GATT 가입 사례 비교 및 시사점               | 4. 환율 관련 쟁점                           |
| III. 비시장경제(NME) 국가의 WTO 가입           | V. 결론                                 |
| 1. 중국                                | 참고문헌                                  |
| 2. 베트남                               |                                       |
| 3. 러시아                               |                                       |
| 4. 비시장경제(NME) 국가의 WTO 가입 사례 비교 및 시사점 |                                       |

## I. 서론

미국과 중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무역 규모를 자랑하는 두 경제 대국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양국 간의

통상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서도 무역 규모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복합적인 상황의 근저에는 비시장경제(non-market economy, 이하 NME)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의 WTO 수용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자리하고 있

다. 미국은 중국의 WTO 가입이 잘못된 결정이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중국은 WTO 가입 이후 중국이 다른 어느 국가보다도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을 이루었다고 주장하며 양측의 시각 차이가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있다. 이러한 양국의 통상갈등과 입장의 차이는 WTO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여 그동안 발전해 온 다자통상체제를 뒤흔들고 있다.

이러한 위기의 원인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적절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비시장경제(NME) 국가들의 다자통상체제 편입의 역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GATT/WTO 체제는 자본주의 국가들을 중심으로 자유무역과 시장경제원칙에 기반해 기획되고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GATT 시기부터 비시장경제(NME) 국가들의 참여와 가입이 허용되었고, 특히 WTO 출범 이후에는 공산권 및 구공산권 국가들이 대거 수용되면서 다자통상체제의 발전에 양날의 검이 되었다.

비시장경제(NME) 국가들의 WTO 대거 가입은 초기에는 WTO가 진정한 세계기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그 정당성과 합법성을 부여하였으며, 세계무역체제의 안정적인 운영에 기여하여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WTO 체제에

심각한 부담을 안겨주게 되어 다자통상체제의 불안정성을 초래하는 핵심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sup>1)</sup>

특히 중국의 WTO 가입 의정서 제15항(d)에 따라 중국의 비시장경제지위가 2016년 11월 11일에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미국과 EU는 중국의 시장경제지위 자동 부여 주장을 거부하며 이를 부인하였다. 대신, 이들 국가들은 국내법의 개정 또는 제정을 통해 중국이 비시장경제(NME) 국가로서 WTO 다자통상체제 내에서 초래할 수 있는 부작용을 차단하려는 시도를 지속하였다. 그만큼 비시장경제 문제가 다자통상체제에서 매우 이슈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비시장경제 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WTO 체제 전반에 걸쳐 파급효과를 미치게 되었다. 그중에서도 WTO 분쟁해결 기구는 WTO 다자통상체제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 중 하나를 담당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기구로 WTO체제의 법적 안정성과 규범 준수를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을 둘러싼 구조적인 문제점과 서로 다른 시장체제에 관련된 핵심 쟁점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면서 WTO는 점점 더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1) 안덕근, “WTO 체제 거버넌스의 구조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분석.” 통상법률 제97호, 213면, 2011.

주목할 만한 점은 미국이 2017년부터 상소기구 위원 임명을 거부하기 시작하면서 분쟁해결기구의 기능이 점차 약화되었고 위원들의 임기가 순차적으로 종료되면서 2019년 12월 10일을 기점으로 상소기구는 사실상 마비 상태에 이르렀다.<sup>2)</sup> 이러한 사태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전쟁이 본격화 되는 시점과 맞물려 다자간 통상체제 내에 오랫동안 잠재되어 있던 구조적 문제들이 하나둘씩 본격적으로 노출되기 시작했다.

본 연구에서는 주요 비시장경제(NME) 국가들의 GATT 및 WTO 가입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다자통상체제의 비시장경제(NME) 국가 참여에 대한 구조적 쟁점들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비시장경제(NME) 국가들의 다자통상체제 가입을 위한 협상 과정에서 다루어졌던 주요 현안들을 검토하고 관련 국가들의 사례를 비교검토해 보았다. 이들 사례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다자통상체제 속에서의 비시장경제(NME) 체제의 구조적 쟁점들을 정리하여 향후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II. 비시장경제(NME) 국가의 GATT 가입

GATT는 관세장벽과 수출입 제한을 제거하고 국제무역을 증진하기 위하여 1947년 제네바에서 미국을 비롯한 23개국<sup>3)</sup>이 가입한 국제무역협정이다.<sup>4)</sup> 초기 23개 국가의 체약국으로 시작하여 1994년에는 128개국으로 발전하였고, 이들 중에는 GATT 창립 멤버인 쿠바와 체코슬로바키아를 포함하여 GATT에 추후 가입한 유고슬라비아, 폴란드, 루마니아, 헝가리 등 동유럽 지역의 비시장경제(NME) 국가들도 포함되어 있다. 당시 동유럽의 NME 국가들이 GATT 가입을 원했던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GATT 가입을 통해 시장경제국가들이 자국에 대한 차별적인 경제조치(관세, 수량제한, 수출제한 등)를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국제무역에서의 불이익을 해소하려는 목적이었다. 둘째, 유럽공동체(European Community, 이하 ‘EC’)의 대두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려

2) 고지현·노영예·양지영, “WTO 상소기능 정지에 따른 MPIA의 주요내용 및 함의”, 관세연구 23-03, 1면, 2024.

3) Irwin, Douglas, Petros Mavroidis, and Alan O. Sykes. “The Genesis of the GATT”,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8, at 101 : GATT 협상은 1947년 10월 30일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으며 PPA(임시 적용 의정서)에 따라 1948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초기 23개 체약국은 다음과 같다 : 호주, 벨기에, 브라질, 버마, 캐나다, 실론, 칠레, 중국, 쿠바, 체코슬로바키아 공화국, 프랑스, 인도, 레바논,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파키스탄, 남로디지아, 시리아, 남아프리카, 영국, 미국.

4) 기획재정부 시사·경제용어사전. <<https://www.moef.go.kr/sisa/dictionary/detail?idx=115>>  
KDI 시사용어사전. <<https://eiec.kdi.re.kr/material/wordDic.do?key=GATT>>

는 의도가 있었다. 셋째, 다자간 무역 관계를 발전시키고 무역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보다 효과적으로 중재하고 조정하려는 필요성이 있었다.<sup>5)</sup>

아래 [표 1]은 GATT에 가입한 계약국들 중 비시장경제(NME) 국가인 쿠바, 체코슬

로바키아, 유고슬라비아, 폴란드, 루마니아, 헝가리의 GATT 가입 시기와 가입을 위한 협상 기간을 정리하였다. (6개국의 GATT 가입 사례를 비교하며 초기 다자통상체제에 대한 함의를 도출해본다.)

[표 1] GATT 가입 비시장경제(NME) 국가의 가입 시기 및 협상 기간

	국가	지역	가입시기	협상기간	가입종류
1	쿠바	남아메리카	1948.01.01	-	원계약국
2	체코슬로바키아	동유럽	1948.04.20	-	원계약국
3	유고슬라비아	동유럽	1966.08.25	16년	신규가입
4	폴란드	동유럽	1967.10.18	10년	신규가입
5	루마니아	동유럽	1971.11.14	14년	신규가입
6	헝가리	동유럽	1973.09.09	7년	신규가입

### 1. GATT 원계약국

GATT의 출범과 함께 원계약국으로 GATT에 가입한 쿠바와 체코슬로바키아는 GATT 협정의 체결 이후 사회주의 정권으로 전환되었으나, 이들 두 국가는 사회주의국가로 변화하기 전에 이미 GATT에서의 법적 지위가 확립되었기 때문에 원계약국으로서 GATT에 계속 남아 있었고 따라서 별도의 가입 협상을 진행하지 않았다.<sup>6)</sup>

### 가. 쿠바

쿠바는 거의 400년간 스페인의 식민지였으며 1898년 미국-스페인 전쟁 이후 미국의 지배를 받게 되면서 사실상 미국의 식민지로 지위가 변화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의 주도하에 설립된 GATT의 출범과 함께 쿠바는 1948년 1월 1일 원계약국 신분으로 GATT에 가입하게 되었다. 11년 뒤인 1959년 피델 카스트로의 쿠바 혁명으로 사회주의 공화국으로 전환되면서 쿠바는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를 도입하기 시작

5) 김기홍·박용석, “중국의 GATT 가입과 우리의 대응방향”, 산업연구원, 4면, 1993.

6) K. Grzybowski. “Socialist Countries in GATT.” The American Journal of Comparative Law, 1980, at 547 : 체코슬로바키아는 GATT를 초안 작성한 초기 계약국이었으며, 쿠바는 GATT에 최초로 서명한 국가 중 하나였다. 이는 두 국가가 소련식 사회주의로 전환되기 이전이었다.

했다. 이처럼 비시장경제(NME) 국가로 변모한 쿠바는 자국의 정치적 및 경제적 이익을 위해 GATT 체제에 계속 남아 있는 전략을 선택하였으나, 1962년부터 시작된 미국의 금수조치로 인해 소련을 중심으로 한 ‘경제상호원조회의(Council for Mutual Economic Assistance, 이하 ‘COMECON’)<sup>7)</sup> 국가들과 주로 무역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sup>8)</sup> 1995년 WTO가 출범하면서 쿠바는 WTO 협정 제11조에 따라 자동적으로 WTO의 원회원국이 되었다. 현재 쿠바는 여전히 미국의 경제 제재하에 있으며 이는 쿠바의 경제와 무역 발전의 결정적인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바는 WTO 회원국으로서의 지위를 활용하여 다자통상체제 내에서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sup>9)</sup> 이와 같이 쿠바의 GATT/WTO 참여 과정은 복잡한 역사적 맥락과 정치적 및 경제적 배경에서 이루어졌다. 이는 GATT/WTO 체제가 단순한 경제적 협력의 장을 넘어서 국제 정치적 역학 관

계와 국가의 전략적 선택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장이라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 나. 체코슬로바키아

체코슬로바키아는 1947년 10월 30일 원체약국 신분으로 GATT 체결 후 그 이듬해인 1948년 2월에 발생한 무혈 쿠데타를 통해 공산당이 정권을 장악하게 되면서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도입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변화는 서방 국가들, 특히 미국과의 관계에 악영향을 미쳤다. 1951년 미국은 체코슬로바키아에 대한 최혜국대우(MFN)를 철회하고 체코슬로바키아와의 외교 관계도 단절했다. 다른 GATT 체약국들은 미국만큼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지만, 체코슬로바키아에 대한 차별적인 무역 정책을 시행하였다. 차별적 관세, 쿼터, 수입허가제도 등을 통해 체코슬로바키아와의 무역을 제한하고 다자통상체제 대신 양자 간 무역을 더 선호하였다.<sup>10)</sup> 체코슬로바키아의 사회주의 체제는 42년 동안 유지되다가

7) 대한무역진흥공사, 동구시장 : 유고슬라비아, 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 헝가리, 루마니아. 17면, 1971 참고. 코메콘(COMECON)은 Communist Economic Conference의 약자로서 경제상호 원조회의라 한다. UN이나 GATT 등 국제기관에서는 CMEA로 사용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코메콘이란 명칭이 널리 쓰이고 있다. 코메콘의 정식 가맹국은 소련, 동독, 폴란드, 체코,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 몽고 등 8개국이다. 한편 유고는 64년 이후 준가맹국으로 회의에 참석했다. 2차 대전 후 성립된 사회주의 국가들은 경제부흥과 농업생산의 회복에 의해 사회주의 국가 간의 대외 경제관계의 새로운 개선이 필요하게 되었다. 한편 자본주의 제국은 마셜·플랜, 나토의 결성 등에 의해 공산주의에 대한 방위태세를 굳건히 하자 공산권 국가들은 서방측의 정치, 경제적 봉쇄에 대처하기 위해 공산권 국가만의 경제협력기구인 코메콘을 결성한 것이다.

8) Jones, Kent. "Cuba, Trade Dependency and the GATT/WTO System.", *International Advances in Economic Research*, 24.4, 2018, at 326.

9) Jones, Kent. "Revolutionary Cuba and the GATT/WTO system". *Journal of World Trade* 51.5, 2017, at 838.

1990년 동유럽 혁명으로 자유주의 정권이 수립되면서 ‘체코슬로바키아 사회주의 공화국’이 해체되고 ‘체코슬로바키아 연방공화국’으로 재편되며 다시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였다. 1993년 1월 1일, 체코슬로바키아는 평화적으로 80여 년의 연합을 청산하고 ‘체코 공화국’과 ‘슬로바키아 공화국’으로 분리, 독립했다. 분리 후 두 국가는 1993년 4월 15일 각각 GATT에 재가입하였다. 체코슬로바키아의 GATT 체제 참여 과정은 냉전 시기의 동서 진영 간의 갈등이 다자통상체제에 미친 영향을 잘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 2. GATT 신규 가입국

원체약국 외에 구체적인 협상을 통해 GATT에 신규 가입한 유고슬라비아, 폴란드, 루마니아, 헝가리 등 4개 비시장경제(NME) 국가를 살펴보면 정치체제의 대립과 경제 통상정책의 상이성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협상 기간이 평균 11년으로 상당히 긴 시간이 소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비시장경제(NME) 국가들의 GATT 가입 과정이 순탄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 가. 유고슬라비아

유고슬라비아의 GATT 가입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16년간의 긴 협상 끝에, GATT에 신규 가입한 첫 번째 비시장경제(NME) 국가일 뿐 아니라 관세양허 협상을 거쳐 가입한<sup>11)</sup> 국가였기 때문이다. 유고슬라비아의 GATT 가입 이유는 당시의 지정학적 변화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냉전 초기에 소련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던 유고슬라비아는 1948년을 기점으로 소련과의 관계가 급격히 악화되면서 COMECON에 가입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고슬라비아는 COMECON 가입 실패에 따른 경제적 및 정치적 고립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적 대안으로 GATT 가입을 모색한 것으로 평가된다.<sup>12)</sup> 이는 유고슬라비아가 동구권 경제 블록에서 배제된 상황에서 서방 진영과의 경제 협력을 통해 국가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유고슬라비아의 GATT 가입 과정은 16년에 걸친 장기적이고 복잡한 경제 개혁과 관세양허 협상을 수반했다. 1950년 읍서버 지위 획득을 시작으로 1959년 준회원국 지위 획득, 1960년 7월 127개 품목<sup>13)</sup>에

10) 김기홍·박용석, 앞의 논문, 12면.

11) Protocol for the Accession of Yugoslavia, L/268, ANNEX.

12) Zhang, Bin. The Evolution of the Non-market Economy Treatment in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Springer Singapore, 2018, at 96.

대한 제한적 임시 관세 도입, 1961년 모든 무역 품목을 포괄하는 영구 관세 양허표 통과, 1962년 잠정가입을 거쳐 1966년 정식 가입 등에 이르는 단계적 접근을 통해 진행되었다.<sup>14)</sup> 이러한 장기화 요인으로는 비시장경제(NME)에서 시장경제로의 점진적 전환, 국내 경제에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단계적 관세양허 확대, 기존 회원국들과의 복잡한 협상 과정 등을 들 수 있다. 유고슬라비아는 1966년 GATT 정식 가입을 통해 다자통상체제에 완전히 편입되었으나, 1990년대 이후 6개 연방공화국으로 분리되면서 더 이상 GATT 체약국의 지위를 이어받지 못하게 되었다.

#### 나. 폴란드

폴란드의 GATT 가입 과정은 유고슬라비아와는 매우 다른 양상을 보였다. 폴란드는 GATT의 일반 원칙을 준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반면, 자국의 경제체제와 대외무역 방식은 변경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

장을 명확히 했다. 이로 인해 폴란드는 유고슬라비아와 같은 관세양허에 의한 가입 협상을 진행할 수 없었다. 이에 대신하여 폴란드는 “GATT 체약국으로부터의 수입을 매년 7%씩 증가”<sup>15)</sup>할 것을 약속하고 각종 약속 이행을 검토하기 위한 연례검토를 진행<sup>16)</sup>하는 것을 조건으로 GATT에 가입했다. 그러나 이러한 가입 방식은 폴란드에 여러 제약을 초래했다. 가입 협상에서 GATT 체약국들이 폴란드에 대한 차별적 수량제한 조치를 점진적으로 철폐하기로 결정<sup>17)</sup>했기에 사실상 최혜국대우와 내국민대우의 혜택을 받지 못했고 폴란드에만 적용되는 선별적 세이프가드 조치의 시행을 허용<sup>18)</sup>하여 GATT 체약국들과의 무역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되었다.

폴란드의 가입 사례는 비시장경제(NME) 국가가 다자통상체제에 편입되는 과정에서 직면하게 되는 어려움과 그에 대한 대응 방식을 잘 보여주면서 비시장경제(NME) 국가의 GATT 신규 가입에 대한 중요한 선

13) Report of the Working Party : Relations with the Federal People's Republic of Yugoslavia, GATT L/986, 16 May 1959.

14) Grzybowski, Kazimierz. "Socialist Countries in GATT." The American Journal of Comparative Law, 28.4, 1980, at 547.

15) Accession of Poland, L/2851, ANNEX B, 9 : Poland shall, with effect from the date of this Protocol, undertake to increase the total value of its imports from the territories of contracting parties by not less than 7 per cent per annum.

16) Ibid, paras. 5-7, ANNEX A.

17) Ibid, para. 3.

18) Ibid, para. 4.

례가 되었다. 이는 이후 GATT에 가입한 다른 동유럽국가들에 참고할 만한 모델을 제공했다. 특히 루마니아와 헝가리가 GATT에 가입할 때 폴란드의 사례를 참고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GATT 체제가 비시장경제(NME) 국가를 수용하기 위해 어떻게 유연성을 발휘했는지를 보여준 중요한 사례이기도 하다.

#### 다. 루마니아

루마니아의 GATT 가입 과정은 폴란드의 경험을 상당 부분 참조하여 유사한 경로를 거쳤다고 볼 수 있다. 두 국가는 1957년에 동시에 GATT 옵서버 지위를 획득했으나 루마니아는 폴란드가 GATT에 정식 가입한 이듬해인 1968년에야 가입신청을 제출했다. 이는 루마니아가 폴란드의 가입 과정을 면밀히 관찰하고 참조했음을 시사한다.

루마니아 역시 관세 체제의 미정비로 인

해 관세양허를 통한 GATT 가입을 진행할 수 없었다. 대신 루마니아는 “경제발전 5개년 계획에 제시된 전체 수입 증가율보다 낮지 않은 비율로 GATT 체약국으로부터 수입을 증가”<sup>19)</sup>하기로 약속했다. 이는 폴란드가 제시한 “매년 7%씩 수입 증가” 약속과 유사한 접근 방식이었다. 또한 루마니아는 각종 약속 이행을 검토하기 위한 연례검토를 진행<sup>20)</sup>하는 것에 동의했는데 이 역시 폴란드의 사례를 따른 것이다. 가입 협상 과정에서 루마니아는 GATT 체약국들의 루마니아에 대한 차별적 수량제한 조치의 철폐 시한을 1974년 말로 명확히 설정<sup>21)</sup>하는데 성공했으나 GATT 체약국들의 폴란드에 대한 선별적 세이프가드 조치의 시행<sup>22)</sup>은 폴란드와 마찬가지로 막아내지 못했다.

루마니아의 가입 사례는 비시장경제(NME) 국가들의 GATT 가입 모델을 더욱 공고히 하는 데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19) Accession of Romania, L/3601, ANNEX B : Romania, on the basis of mutual advantage which is inherent in the General Agreement, will develop and diversify its trade with the contracting parties as a whole, and firmly intends to increase its imports from the contracting parties as a whole at a rate not smaller than the growth of total Romanian imports provided for in its Five-Year Plans.

20) Ibid, paras. 5-6, ANNEX A.

21) Ibid, para. 3 : Contracting parties still maintaining prohibitions or quantitative restrictions not consistent with Article XIII of the General Agreement shall not increase the discriminatory element in these restrictions, undertake to remove them progressively and shall have as their objective to eliminate them before the end of 1974.

22) Ibid, para. 4.

### 라. 헝가리

헝가리의 GATT 가입은 이전 비시장경제(NME) 국가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진행되었으며 이로 인해 헝가리는 협상을 통해 GATT에 가입한 4개 비시장경제(NME) 국가 중 협상 시간이 가장 짧은 국가가 되었다.

헝가리는 1966년에 GATT 옵서버 지위를 획득한 후 1968년부터 경제정책 결정의 분권화와 시장 요소의 부분적 도입을 중심으로 한 ‘신경제매커니즘’을 도입하여 지속적인 경제 개혁을 추진했다.<sup>23)</sup> 이는 헝가리의 GATT 가입을 위한 경제적, 제도적 기반을 탄탄하게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헝가리의 GATT 가입 방식은 유고슬라비아의 사례를 따라 관세양허<sup>24)</sup>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이는 폴란드와 루마니아가 채택한 별도의 수입 약속 방식과는 차이를 보였다. 헝가리의 가입 의정서 중 가장 주목할 만한 조항은 제3조<sup>25)</sup>로 헝가리와 무

역을 진행하고 있는 국가 리스트를 부속서<sup>26)</sup>로 만들어 특정 국가들과 기존의 중앙계획경제 방식에 따른 무역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을 포함했다. GATT 체약국들이 헝가리에 대한 차별적인 수량제한 조치와 관련해서는 1975년에 검토를 진행한 후 철폐 여부를 결정하기로 약속<sup>27)</sup>했다. 또한 헝가리에 대한 선별적 세이프가드 측면에서 GATT 체약국들에게 헝가리에 수입제한을 진행할 수 있는 권리를 허용<sup>28)</sup>했다. 이 외에 폴란드와 루마니아의 사례를 따라 헝가리도 각종 의무 이행 검토를 위한 연례검토를 수행<sup>29)</sup>하기로 약속했다.

이러한 헝가리의 GATT 가입은 이전 비시장경제(NME) 국가들의 경험을 토대로,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이는 GATT 체제가 비시장경제(NME) 국가를 수용하는 데 있어 그 전보다 더 큰 유연성을 발휘했다는 점을 시사한다.

23) 이충목, “체제이행의 정치 : 헝가리의 사례연구”. 국제지역연구 제9호, 85면, 2000.

24) Accession of Hungary, L/3908, ANNEX C.

25) Ibid, para. 3 : (a) Paragraph 1 shall not prevent the maintenance by Hungary of its existing trading regulations with respect to products originating in or destined for the countries enumerated in Annex A hereto.

26) Ibid, ANNEX A : Albania, Bulgaria, Czechoslovakia, the German Democratic Republic,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Mongolia,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oland, Romania, the 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s, the Democratic Republic of Viet-Nam.

27) Ibid, para. 4.

28) Ibid, para. 5.

29) Ibid, paras. 6-7, ANNEX B.

### 3. GATT 가입 사례 비교 및 시사점

신규 비시장경제(NME) 가입국의 GATT 가입 협상은 다층적인 과정을 거쳤다. 이 과정은 크게 가입 절차와 협상 내용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가입 절차 측면에서는 일반적으로 옵서버(Observer), 준회원국(Associated Member), 잠정가입(Provisional Accession), 정식가입(Accession) 등의 네 단계를 거쳤다. 협상 내용 측면에

서는 주로 가입조건, 차별적 수량제한 조치(Quantitative Restrictions), 선별적 세이프가드 조치<sup>30)</sup>(safeguard measures), 검토 및 협상(Review and consultation), 환율정책(Foreign exchange arrangement) 등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다층적인 협상 과정은 비시장경제(NME) 국가들의 특수한 경제체제와 GATT의 자유무역 원칙 간의 간극을 좁히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표 2] GATT 신규 가입국(NME)의 가입 의정서 내용 비교

	협상내용	유고슬라비아	폴란드	루마니아	헝가리
1	가입조건	관세양허	수입 약속	수입 약속	관세양허
2	수량제한	×	점진적 철폐	1974년까지 점진적 철폐	점진적 철폐+ 1975년에 검토 진행
3	세이프가드	×	허용	허용	허용
4	연례검토	×	진행	진행	진행
5	외환제도	×	특별환협정	특별환협정	특별환협정

× : 의정서에서 언급되지 않음.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GATT 신규 가입 비시장경제(NME) 국가들의 가입 조건은 크게 관세양허와 수입 약속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모든 비시장경제(NME) 신규 가입국은 GATT 가입 시 이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다. 유고슬라비아와 헝가리의 경우 GATT 가입 이전에 이미 상당한 수준의 경제 개혁을 통해 자국 내에 시장경제 체제의 기반을 구축했기에

관세양허를 통한 가입이 가능했다. 관세양허는 GATT의 기본 원칙에 더 부합하는 방식으로 시장경제 체제를 갖춘 국가들이 주로 선택하는 옵션이다. 반면 폴란드와 루마니아는 당시 여전히 비시장경제 체제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에 관세양허 대신 별도의 수입 약속을 통해 GATT에 가입할 수밖에 없었다. 폴란드는 GATT 계약국으로부터의 수입을 매년 7%씩 증가시

30) 당시 세이프가드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기에 가입 의정서 원문에서는 ‘free to restrict the imports.....’로 표현함. 관련 조항은 GATT 19조 ‘Emergency Action on Imports of Particular Products’ 참조.

키기로 약속했고 루마니아는 자국의 경제 발전 5개년 계획에 제시된 전체 수입 증가율보다 낮지 않은 비율로 GATT 체약국으로부터 수입을 증가시키기로 약속했다. 이러한 차이는 각 국가의 경제체제와 GATT 가입 준비 정도를 반영한다. 시장경제 요소를 더 많이 도입한 국가들은 관세양허를 통한 가입이 가능했지만, 중앙계획경제 요소가 더 강한 국가들은 수입 약속이라는 대안적 방식을 통해 GATT에 가입해야 했다.

차별적 수량제한 조치에 관해서는 가입 국별로 점진적인 발전이 있었다. 폴란드의 경우에는 GATT 제13조<sup>31)</sup>에 부합되지 않는 차별적 수량제한 조치를 점진적으로 줄이는 내용으로만 협상되었다. 루마니아의 경우에는 한 단계 진전되어 점진적 감소와 함께 1974년 철폐 시한이 추가되었다. 헝가리는 이러한 조건이 더욱 구체화되어 점진적 감소 후 1975년 검토통해 차별적 수량제한 조치의 철폐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협상이 마무리되었다.

세이프가드 조치와 관련하여 폴란드, 루

마니아, 헝가리 3개국 모두 해당 국가에서 GATT 체약국 영토로 수입되는 동종 또는 직접적으로 경쟁적인 상품이 그 영토 내에서의 국내 생산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거나 그 우려가 있을 정도로 물량이 증가할 경우 체약국들이 해당 국가 제품의 수입을 자유롭게 제한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다. 그러나 폴란드의 가입협정에서는 다른 GATT 체약국들만 일방적으로 폴란드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반면, 루마니아와 헝가리의 가입협정에서는 다른 GATT 체약국뿐만 아니라 루마니아와 헝가리에도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동등한 권리를 부여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연례검토에 대해서는 각국은 서로 다른 주기로 검토를 받기로 했다. 폴란드는 가입 의정서 발효 9개월 후와 그 이후 매년, 루마니아는 가입 의정서 발효 이후 두 번째 해와 그 이후 격년, 헝가리는 격년으로 각종 약속 이행에 관한 검토와 협상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외환제도와 관련하여 폴란드, 루마니아, 헝가리 3개 국가 모두 GATT 제15조 제6항<sup>32)</sup>에 대해 유보

31) GATT 1947 Article XIII : Non-discriminatory Administration of Quantitative Restrictions.

32) 이 조항의 협정 한글 원문은 다음과 같다.

6. 동 기금의 회원국이 아닌 체약당사자는 체약당사자단이 동 기금과의 협의 후 결정할 시간 내에, 동 기금의 회원국이 되든지 또는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체약당사자단과 특별협정을 체결한다. 동 기금의 회원국이 아니게 된 체약당사자는 즉시 체약당사자단과 특별협정을 체결한다. 이 항 하에서 체약당사자가 체결한 특별협정은 그 후 즉시 동 체약당사자의 이 협정 하에서의 의무의 일부분이 된다.

입장을 취하지만 국제통화기금 회원국이 아닌 기간 동안에는 특별환협정의 원칙과 완전히 일치하는 방식으로 환율 문제를 처리할 것을 약속했다.<sup>33)</sup>

한 가지 더 주목할 점은 GATT에 가입한 6개 비시장경제(NME) 국가 모두 GATT 체약국인 동시에 앞서 언급했던 COMECON 회원국이기도 했다는 것이다. 이는 냉전 시대의 다자통상체제의 복잡성을 잘 보여 준다. 쿠바는 1959년 사회주의 정권 수립 후 미국의 금수조치로 인해 불가피하게 COMECON 국가들과 무역을 진행하면서 자연스럽게 COMECON 회원국이 되었다. 체코슬로바키아는 GATT 가입한 이듬해에 바로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서면서 사회주의 진영을 대표하는 COMECON의 창립 회원국이 되었다. 유고슬라비아의 경우 1948년부터 소련의 관계 악화로 COMECON 가입이 지연되다가 1964년 코메콘 은행(국제경제협력은행) 설립을 계기로 준회원국 신분을 획득하고 1966년 GATT에 가입했다. 폴란드, 루마니아, 헝가리는 모두 COMECON 창립 회원국이었으나 1950년대 중반부터 다자통상체제를 인정하기 시작하면서 GATT 가입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하여 성공적으로 GATT에 가입했다.

COMECON 창립을 주도했던 소련도 1980년대부터 GATT 가입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중국도 1986년 GATT 원체약국 지위 회복 신청을 제출하였는데, 이는 GATT 가입이 당시 글로벌 경제 체제로의 편입을 위한 중요한 경로였음을 시사한다. GATT에 가입한 비시장경제(NME) 국가들은 지리적, 경제적 규모가 크지 않았기에 당시 GATT 체제의 근간을 흔들만한 충격은 주지 못했다. 그러나 WTO 체제로 전환된 이후 비시장경제(NME) 국가들이 대거 편입되면서 다자통상체제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 III. 비시장경제(NME) 국가의 WTO 가입

1995년 1월 1일 WTO 체제가 정식으로 출범하며 GATT 체제를 대신하여 국제무역질서를 바로 세우고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의 이행을 감시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다. WTO는 GATT에 부재했던 국제통상 분쟁 조정, 관세 인하 요구, 반덤핑 규제 등 준사법적 권한과 구속력을 행사하며, 서비스·지식재산권 등 새로운 교역 과제도 포괄하여 세계 무역을 증진시키는 역할도 하게 되었다. WTO의 설립으로 1994년

33) International Monetary Fund, Membership and Nonmembership in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1985, at 426.

12월 31일 ‘GATT 1947’ 체제는 공식적으로 종료되었다.

2025년 1월 기준, WTO는 166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근 2024년 2월 26일 코모로(Comoros)와 동티모르(Timor-Leste)가 가입함으로써 2016년 아프가니스탄 가입 이후 8년 만에 신규 회원국을 맞이하게 되었다.<sup>34)</sup> WTO 회원국은 ‘원회원국’(128개)과 ‘일반 회원국’(38개)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원회원국’은 WTO 협정 제 11조에 따라 원회원국 지위로 가입한 국가 또는 독립관세영역(76개)<sup>35)</sup>과 WTO 협정 제 14조에 따라 가입한 국가 또는 독립관세

영역(52개)<sup>36)</sup>으로 구분된다. ‘일반 회원국’은 WTO 협정 제 12조에 근거하여 신규 회원국 자격으로 가입한 국가 또는 독립관세 영역(38개)<sup>37)</sup>을 지칭한다.<sup>38)</sup>

38개 신규 가입국의 구성을 살펴보면 체 전환국 21개, 개도국 25개, 최빈개도국 7개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WTO가 다양한 경제 발전 단계에 있는 국가들을 포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현재 22개의 옵서버 국가들이 WTO 가입 협상을 진행 중이며, 이는 WTO의 지속적인 확장 가능성을 시사한다.

[표 3] WTO 가입국 및 옵서버 국가 현황(2025년 1월 기준)

지역	아프리카	유럽/CIS	아시아태평양	중동	아메리카
국가수	4	16	12	4	2
신규 가입국	2008 카보베르데 2015 세이셸 2016 라이베리아 2024 코모로	1996 불가리아 1998 키르기스스탄 1999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2000 조지아 알바니아 크로아티아 2001 라투니아 몰도바 2003 아르메니아 북마케도니아 2008 우크라이나 2012 몬테네그로	1997 몽골 2001 중국 2002 대만, 중국 2004 네팔 캄보디아 2007 통가 베트남 2012 사모아 바누아트 2013 라오스 2014 아프가니스탄 2024 동티모르	2000 요르단 오만 2005 사우디아라비아 2014 예멘	1996 에콰도르 1997 파나마

34) WTO Annual Report 2024, at 13.

35) GATT 회원국이면서 1995년 1월 1일 이전까지 WTO 협정을 수락한 국가를 의미함.

36) GATT 회원국이면서 1995년 1월 1일부터 1997년 1월 1일까지 WTO 협정을 수락한 국가를 의미함.

37) GATT 비회원국이면서 가입 작업반 설치 및 양허협상을 통해 WTO에 가입한 국가를 의미함.

38) World Trade Organization, Status of Legal Instruments, 1996, at 23.

지역	아프리카	유럽/CIS	아시아태평양	중동	아메리카
		러시아 2013 타지키스탄 2015 카자흐스탄			
국가수	8	8	1	4	1
읍서버	1987 알제리 1994 수단 2003 에티오피아 2004 리비아 2005 상투메 프린시페 2008 적도 기니 2016 소말리아 2017 남수단	1993 벨라루스 1994 우즈베키스탄 1997 아제르바이잔 안도라 1999 보스니아헤르체 고비나 2005 세르비아 2020 퀴라소 2022 투르크메니스탄	1999 부탄	1999 레바논 2004 이라크 2005 이란 2010 시리아	2001 바하마

WTO 가입 절차는 원회원국과 신규 회원국 간에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원회원국은 별도의 협상 없이 자동으로 회원국 자격이 부여되는 반면 일반 회원국, 즉 신규 회원국은 작업반 설치, 다자간 협상 절차, 양자 간 협상, 복수국 간 협상, 작업반 초안 채택, 일반이사회 및 각료회의의 공식 채택, 기존 회원국의 승인, 승인 통보, 가입 완료 및 가입 협정의 발효 등 상당히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최종적으로 WTO에 가입할 수 있다.<sup>39)</sup>

신규 가입국들의 협상 기간은 평균 11년으로 최단 2년(키르기스스탄)에서 최장 20년(세이셸)까지 매우 다양하다. 또한 38개의 일반 회원국 중 비시장경제(NME) 국가의 수는 21개에 달하고 있는데, 이는 전체 신규 가입국의 절반 이상(약 55%)을 차지

함으로써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중국, 베트남, 러시아의 가입 사례는 국제적으로 큰 주목을 받았다. 중국의 경우 15년에 걸친 장기간의 협상 끝에 2001년 WTO에 가입하였으며 중국의 가입은 다자통상체제에 큰 변화를 불러왔다. 베트남은 WTO 가입 후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루어 주목을 받았으며 러시아는 구 코메콘 국가이자 독립국가연합(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이하 'CIS')의 대표적 국가로서 19년간의 협상 끝에 2012년 WTO에 가입했다.

이들 국가의 WTO 가입 협상은 작업반 보고서를 기준으로 경제정책, 정책 수립 및 집행을 위한 프레임워크, 상품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 제도, 서비스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정

39) 상세한 가입 절차는 <A Handbook on Accession to the WTO> 참고.

책, 투명성 등 6개 주요 항목으로 구성된다. ‘경제정책’ 항목에서는 통화 및 재정정책, 외환정책, 국영기업관련 정책, 가격정책, 경쟁정책 등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정책 수립 및 집행을 위한 프레임워크’ 항목에서는 해당국 정부의 구조와 권한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상품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항목에서는 상품 무역에 대한 수출입 규제와 상품의 대외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국내정책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무역관련 지식재산권 제도’ 항목에서는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을 근거로 한 지재권의 실질적 보호 기준과 취득 및 유지 절차, 남용 방지 조치와 집행에 관련된 내용을 다룬다. ‘서비스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항목에서는 해당국의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이하 ‘GATS 협정’)의 이행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투명성’ 항목에서는 해당 국가의 무역 관련 정보 공개와 통지에 관한 규정을 다룬다. 이 중 비시장경제와 관

련된 조항들을 선택하여 중국, 베트남, 러시아 등 세 개 국가의 가입 사례를 구체적으로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 1. 중국

중국의 WTO 가입은 다자통상체제 역사에서 가장 주목받은 가입 사례 중 하나이다. 우선 1986년 7월 GATT 체약국 지위 회복을 공식 요청한 이후 2001년 12월 11일 최종 가입까지 15년이라는 장기간의 협상 과정을 거쳤다.<sup>40)</sup> 이는 WTO 신규 가입국의 평균 협상 기간인 11년을 상회하는 기간으로 중국 가입의 복잡성과 중요성을 반영한다.

중국의 WTO 가입 의정서(Protocol on the Access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sup>41)</sup>는 일반적 규칙(I)<sup>42)</sup>, 양허표(II), 최종조항(III) 3개의 파트와 9개의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다. 가입 의정서 제1조 2항<sup>43)</sup>에 따르면 중국의 작업반 보고서(Report of the Working Party on the Accession of

40) 중국 WTO 가입의 상세한 과정은 <中国加入世界贸易组织知识读本4: 中国加入世界贸易组织谈判历程> 참고.

41) Access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WT/L/432, 23 November 2001.

42) 일반적 규칙(I)에는 총 18개 항목이 있다. 1. 일반, 2. 무역제도의 집행, 3. 비차별대우, 4. 특별무역제도, 5. 무역권한, 6. 국영무역, 7. 비관세조치, 8. 수출입허가, 9. 가격통제, 10. 보조금, 11. 수출입에 대한 세금과 과징금, 12. 농업, 13.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14. 위생검역조치, 15. 보조금 및 덤핑 결정시의 가격비교, 16. 과도기 특정 품목 세이프가드 조치, 17. WTO 회원국의 유보, 18. 과도기 정책검토제도.

43) Ibid, at 2 : ...This Protocol, which shall include the commitments referred to in paragraph 342 of the Working Party Report, shall be an integral part of the WTO Agreement.

China)<sup>44)</sup>의 내용도 WTO 협정의 구성 부분으로 인정되므로 중국의 WTO 가입을 분석할 때 의정서와 작업반 보고서를 통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우선 중국의 보조금과 관련하여 작업반 회원국들은 중국 경제의 특수성으로 인한 무역 왜곡 보조금의 가능성에 대해 매우 큰 우려를 표명하였다. 이에 대해 중국 가입 의정서 제10조 ‘보조금’<sup>45)</sup> 조항에서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이하 ‘SCM 협정’)에 의거하여 관련 보조금에 대한 통보를 진행하고 금지 보조금을 모두 철폐하며 국영기업에 대한 보조금은 특정성이 있는 보조금으로 간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작업반 보고서 IV-C-3 (수출 보조금)<sup>46)</sup>과 IV-D-2(보조금 등 산업 정책)<sup>47)</sup>에서 경제특구, 철강, 첨단기술 제품 등 관련 보조금에 대하여 SCM 협정 제 3.1조(a)항과 (b)항에 부합하는 모든 수출 보조금을 철폐할 것을 약속하였다.<sup>48)</sup>

국영기업과 관련하여 가입 의정서 제6

조 ‘국영무역’<sup>49)</sup>에서는 국영무역 기업의 모든 수입 및 구매 절차의 투명성과 WTO 협정의 준수를 보장하고, 정부는 국영기업이 구매 또는 판매하는 상품의 물량, 가치 및 원산지에 대해 영향이나 지침을 주어서는 안되며 국영무역 기업의 수출 상품 가격 책정 메커니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국영기업에 SCM 협정 제3조에 해당하는 모든 금지 보조금을 철폐할 것을 약속하였다. 작업반 보고서 II-6.국영 및 국영 투자 기업<sup>50)</sup>에서는 중국의 국영기업이 기본적으로 시장경제의 규칙에 의해 운영되고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으며, 국영기업의 상품 가격은 시장에 의해 결정되고 국영 은행도 상업화를 실현하여 국유 기업에 대한 대출이 시장경제 조건에서 진행되도록 명시하였다. 또한 작업반 회원국들이 투자 과정 중 기술이전에 영향을 미치는 중국의 관련 법률, 규정 및 조치에 우려를 표명한 것에 관해서는 기술이전 관련 중국의 법률, 규정 및 조치를 부과, 적용 또는 집행하는 것이 WTO 무역관련 지식재산권 협정(TRIPS)

44) Report of the working party on the accession of China, WT/ACC/CHN/49, 1 October 2001.

45) Access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WT/L/432, at 7 : 10. Subsidies.

46) Report of the working party on the accession of China, WT/ACC/CHN/49, at 33 : 3. Export Subsidies.

47) Ibid, at 33 : 2. Industrial Policy, including Subsidies.

48) Ibid, paras. 167-168, 171-176.

49) Access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WT/L/432, at 5 : 6. State Trading.

50) Ibid, at 8 : 6. State-Owned and State-Invested Enterprises.

및 TRIMs 협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할 것임을 약속했다.<sup>51)</sup>

무역구제 조치와 관련하여 반덤핑과 상계조치에 대해 가입 의정서 제15조 ‘보조금 및 덤핑 결정 시의 가격 비교’<sup>52)</sup>과 작업반 보고서 IV-B-13. 반덤핑 및 상계관세<sup>53)</sup>에서는 SCM 협정과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6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Implementation of Article VI of GATT 1994 : Anti-Dumping Agreement, 이하 ‘반덤핑 협정’)에 근거하여 반덤핑과 보조금 판정 시 수입국이 중국의 국내 가격이 아닌 제3국의 수출가격 또는 생산가격을 기준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입 의정서 제15조 마지막 항에는 중국에 대한 비시장경제 분류에 따른 반덤핑 조사가 15년 후(2016년) 종료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다.<sup>54)</sup> 세이프가드 조치 관련하여 가입 의정서 제16조(과도기

특정 품목 세이프가드 조치)<sup>55)</sup>와 작업반 보고서 IV-B-14. 세이프가드<sup>56)</sup>에서 특정 상품에 대한 잠정 세이프가드 조치를 허용하여 중국산 제품이 다른 WTO 회원국으로 수입될 때 수입량이 증가하거나 동종 또는 직접 경쟁 상품의 생산자에게 시장 교란을 야기하거나 야기할 위험이 있을 경우 해당 WTO 회원국은 중국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합의한 내용이 담겨있다.

가격정책과 관련하여 가입 의정서 제9조 ‘가격통제’<sup>57)</sup>에서 모든 분야에서 거래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이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 결정될 수 있도록 허용하였으며, 다중 가격책정(multi-tier pricing)을 철폐하기로 약속하고 관보(official journal)에 국가 책정 가격이 적용되는 상품 및 서비스의 목록과 변경 사항을 발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작업반 보고서 II-7. 가격정

51) Ibid, para. 43.

52) Access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WT/L/432, at 8 : 15. Price Comparability in Determining Subsidies and Dumping.

53) Report of the working party on the accession of China, WT/ACC/CHN/49, at 29 : 13. Anti-Dumping, Countervailing Duties.

54) Access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WT/L/432, at 9 : ...In any event, the provisions of subparagraph (a)(ii) shall expire 15 years after the date of accession. In addition, should China establish, pursuant to the national law of the importing WTO Member, that market economy conditions prevail in a particular industry or sector, the non-market economy provisions of subparagraph (a) shall no longer apply to that industry or sector.

55) Ibid, at 9 : 16. Transitional Product-Specific Safeguard Mechanism.

56) Report of the working party on the accession of China, WT/ACC/CHN/49, at 31 : 14. Safeguards.

57) Access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WT/L/432, at 6 : 9. Price Controls.

책<sup>58)</sup>에서는 시장경제에 기반한 가격 결정 메커니즘을 적용하도록 하고, 가격은 정부 가격(government price), 정부 지도 가격(government guidance price)<sup>59)</sup>과 시장규제 가격(market-regulated price) 세 가지로 분류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 가격은 가격관리 당국에 의해 결정되며 정부 지도 가격은 가격관리 당국이 정한 변동 범위 내에서 기업이 수요와 공급에 따라 스스로 가격을 결정할 수 있게끔 하는 방식이다.<sup>60)</sup> 정부가 가격을 결정하는 모든 상품과 서비스 품목에 대하여 중국은 가격정책 개혁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약속했다.<sup>61)</sup>

환율정책은 가입 의정서에서 언급되지 않았지만, 작업반 보고서 II-3. 외환 및 결제<sup>62)</sup>에서 다루졌다. 외환 통제와 관련하여 중국은 외환 관련 의무를 WTO 협정 및 IMF 관련 규정에 따라 이행하고, 1996년 12월 1일부터 정식으로 IMF 협정 제8조<sup>63)</sup>의 의무를 수락하며 외환거래의 자유화를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관련 조치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것을 약속했다.

지재권(IPR)정책도 가입 의정서에 언급되지 않았지만, 작업반 보고서 V.무역 관련 지식재산권 제도<sup>64)</sup>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되었다. 기존 회원국들의 지재권 보호 관련 우려에 대해 중국은 1980년부터 WIPO를 포함한 여러 국제 지식재산권 협약에 가입했으며 TRIPS 협상에도 참여했음을 설명하고 있으며, 국내 특허법, 저작권법, 상표법 등을 TRIPS 협정에 부합하게 개정하고 관련 법률과 규정은 중국의 입법 기관과 행정부(지식재산권국(SIPO), 상표국, 저작권국 등)에 의해 제정되고 시행될 것이라고 약속하였다. 지재권 분야에서 외국인에게도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를 적용할 것이며, TRIPS 협정 의무를 준수하는 전제하에서 특허법과 상표법을 통한 지재권 남용을 방지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이 외에 중국은 지재권 침해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특허법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침해 행위에 대해 민사 및 형사 책임을 부과하고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고 있음을 설명하

58) Report of the working party on the accession of China, WT/ACC/CHN/49, at 10 : 7. Pricing Policies.

59) 가격통제 목록은 중국 WTO 가입 의정서 WT/L/432 Annex 4 : Products and Services Subject to Price Controls 참고.

60) Ibid, para. 54.

61) Ibid, para. 61.

62) Ibid, at 5 : 3. Foreign Exchange and Payments.

63) Articles of Agreement of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Article VIII.General Obligations of Members.

64) Ibid, at 48 : V. TRADE-RELATED INTELLECTUAL PROPERTY REGIME.

고 있다.

## 2. 베트남

베트남의 경우 1995년 WTO 출범 직후 가입을 신청하여 12년간 14차례의 작업반 회의를 거쳐 2007년 150번째 회원국으로 WTO에 가입하였다. 베트남의 WTO 가입 의정서(Protocol on the Accession of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 Nam)<sup>65)</sup>도 일반적 규칙(I), 양허표(II), 최종조항(III) 3개의 파트와 1개의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다. 베트남의 가입 의정서 제1조 2항<sup>66)</sup>에 따르면 베트남의 작업반 보고서(Report of the Working Party on the Accession of Russian Federation)<sup>67)</sup>도 WTO 협정의 구성 부분으로 인정된다. 앞서 중국의 WTO 가입 의정서에서는 일반적 규칙 부분에 18개의 구체적 조항들이 각각 나열되어 있는 반면, 베트남의 WTO 가입 의정서는 구체적인 조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베트남의 WTO 가입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작업반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환율정책<sup>68)</sup>과 관련하여 베트남은 1989

년 고정환율제도에서 관리변동환율제도로 전환했는데, 1991년 외환거래센터를 개설하고 1994년 은행 간 외환시장을 설립하고 2005년 11월 9일 IMF 협정 제8조의 의무를 수락할 것을 공식 발표했다. 베트남의 외환 의무 매각 규제(1998년 도입)가 GATS 협정 제11조 및 제16조와 상충된다는 지적에 대해 베트남은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도입한 외환 매각 제도를 2005년에 철폐시켰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자본 거래와 관련하여 해외 투자 관련 규제를 완화할 것을 약속하였다.

국영기업<sup>69)</sup>과 관련하여 작업반 회원국들의 베트남 국영기업 운영에 대한 우려에 대하여 베트남은 모든 국영기업과 국가가 통제하는 기업들이 시장 기반으로 운영될 것임을 약속하고, 정부가 국영기업의 의사결정에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며 SCM 협정에 위배되는 모든 금지 보조금을 철폐하고 국영기업에 대한 보조금 통보 의무를 준수할 것임을 약속했다. 또한 국영기업과 관련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영기업과 민간기업 간의

65) Accession of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 Nam, WT/L/662, 15 November 2006.

66) Ibid, at 2 : ...This Protocol, which shall include the commitments referred to in paragraph 527 of the Working Party Report, shall be an integral part of the WTO Agreement.

67) Report of the Working Party on the Accession of Viet Nam, WT/ACC/VNM/48, 27 October 2006.

68) Ibid, at 5 : Foreign exchange and payments.

69) Ibid, at 14 : Enterprises that are State-owned or -controlled, or with special or exclusive privileges.

비차별적 대우를 보장할 것임을 약속하였다.

가격정책<sup>70)</sup>과 관련하여 베트남은 대부분의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가격 자유화를 실시했음을 설명하고 있으며 시장경제 원리에 의한 가격 결정을 약속했다. 그러나 일부 필수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서는 여전히 가격통제를 유지할 것이며 정부는 필요시 WTO 규정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경제 안정을 위한 개입을 진행하고, 이와 관련된 내용은 모두 투명하게 공개할 것임을 약속했다. 베트남인과 외국인 기업 및 개인에게 동일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다른 가격을 부과하는 이중 가격 제도<sup>71)</sup>는 점진적으로 폐지했다는 설명을 제공하고 있다.

무역구제 조치<sup>72)</sup>와 관련하여 베트남은 국내의 관련 법률의 미비로 인해 빠른 시일 내에 WTO 세이프가드 협정, 반덤핑 협정, SCM 협정을 기반으로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조치를 시행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체계를 구축할 것임을 약속했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 시 SCM 협정과 반덤핑 협정에 근거하여 수입국이 베트남의 국내 가격이 아닌 제3국의 수출가격 또는 생산가격을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동 조치가 만료되는 2018년 12월 31일 이후에는 베트남의 제품을 수입하는 WTO 회원국의 국내법에 따라 특정 산업 및 부문에서 시장경제 조건이 지배적임을 입증하면 비시장경제 규정을 더 이상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sup>73)</sup>

보조금<sup>74)</sup>과 관련하여 베트남은 모든 보조금을 SCM 협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 모든 금지 보조금을 철폐 및 보조금 관련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약속했다. 섬유 및 의류 산업에 대해서는 WTO 가입 즉시 철폐하고 기타 산업은 5년 이내에 단계적으로 철폐할 것임을 약속했다.

지재권<sup>75)</sup>과 관련하여 베트남은 WTO 규정에 부합되도록 지적권 보호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저작권, 상표, 의장, 특허 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것임을 약속했다. 과학기술부, 문화정보부, 농업 농촌개발부,

70) Ibid, at 25 : Pricing policies.

71) Ibid, at 27 : Viet Nam had gradually phased out its system of dual pricing according to which Vietnamese and foreign enterprises and individuals were charged different prices for identical goods or services.

72) Ibid, at 64 : Anti-dumping, countervailing duties, safeguard regimes.

73) Ibid, para. 255.

74) Ibid, at 69 : Industrial policy, including subsidies.

75) Ibid, at 95 : TRADE-RELATE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RIPS).

법무부, 재무부, 무역부, 관세청(재무부 산하), 국립 지식재산권청(과학기술부 산하), 저작권국(문화정보부 산하)이 지식재산권 정책 수립 및 시행을 담당할 것임을 설명하고 있으며 지재권 관련 정책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TRIPS 협정을 준수할 것임을 약속했다.

### 3. 러시아

러시아는 WTO가 출범하기 전인 GATT 체제 당시 가입신청을 제출하여 19년 동안의 협상 기간을 거쳐 2012년 156번째 회원국으로 WTO에 가입했다. 1993년 6월 가입신청 후 7월 가입 작업반이 설치되어 가입협상 진행 과정에서 1995년 GATT에서 WTO 가입 협상으로 전환되었으며, 31차례의 작업반 회의를 거쳐 결국 2012년 WTO 회원국으로 정식 가입하게 되었다.

러시아의 WTO 가입 의정서(Protocol on the Accession of the Russian Federation)<sup>76)</sup>는 일반적 규칙(I), 양허표(II), 최종조항(III) 3개의 파트와 1개의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다. 가입 의정서 제1조 2항<sup>77)</sup>에 따르

면 러시아의 작업반 보고서(Report of the Working Party on the Accession of Russian Federation)<sup>78)</sup>의 내용도 WTO 협정의 구성부분으로 인정된다. 베트남과 마찬가지로 러시아의 WTO 가입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중국과 다르게 작업반 보고서에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다. 러시아의 작업반 보고서는 총 612페이지에 달하는데, 이는 중국의 작업반 보고서(180페이지)와 베트남의 작업반 보고서(204페이지)에 비해 매우 방대한 것이 특징이다. 19년 동안 가입협상이 지속된 만큼 중국(15년)과 베트남(12년)과 비교해 볼 때 가장 오랜 기간이 소요되었기에 그만큼 WTO 가입 과정이 매우 어려웠음을 보여주고 있다.

환율정책<sup>79)</sup>과 관련하여 러시아는 1992년부터 국제통화기금(IMF) 회원국임을 밝혔고 러시아의 통화인 루블(RUB)은 시장 환율에 따라 외환으로 환전할 수 있으며 취득과 보유에 제한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작업반 회원국들이 러시아의 특정 외환 통제 및 규제 조치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것에 대하여 러시아는 관련 연방법 개정을 통해 외환에 대한 규제 조치를 점

76) Accession of The Russian Federation, WT/L/839, 17 December 2011.

77) Ibid, at 2 : ...This Protocol, which shall include the commitments referred to in paragraph 1450 of the Working Party Report, shall be an integral part of the WTO Agreement.

78) Report of the Working Party on the Accession of The Russian Federation, WT/ACC/RUS/70, 17 November 2011.

79) Ibid, at 5 : Foreign Exchange and Payments System.

진적으로 WTO 규정에 부합되도록 완화하거나 폐지할 것임을 약속하였다.

국영기업<sup>80)</sup>과 관련하여 작업반 멤버들이 러시아 정부가 국영기업의 활동을 통제하고 영향을 미칠 우려에 대해 러시아는 국내에 상업 활동을 하는 국영 및 국영 통제 기업이 존재하며 특정 상업 활동에 대해 독점적 또는 특별한 권한을 가진 기업들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기업들에 대해 WTO에 가입하는 즉시 WTO 협정에 맞게 상업 활동을 진행하도록 보장하고 기타 WTO 회원국의 기업들에게도 공정하게 경쟁할 기회를 제공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국영기업들이 GATS의 권리와 의무에 따라 행동할 것을 약속했다.

가격정책<sup>81)</sup>과 관련하여 러시아는 대부분 분야에서 시장 원리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지만, 일부 특정 분야(전력, 철도, 주류, 일부 농산물, 철도, 석유, 천연가스 등)<sup>82)</sup>에서는 여전히 국가가 가격을 규제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러한 특정 분야에 대

해서는 WTO 가입 후 WTO 협정에 따라 통제를 적용하여 국내 생산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가격 통제 관련 정책을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약속하였다.

무역구제 조치<sup>83)</sup>와 관련하여 러시아는 WTO 협정에 따라 기존의 연방법 165-FZ를 신규 연방법 280-FZ(‘수입품에 적용되는 세이프가드, 반덤핑 및 상계조치에 관한 연방법’)로 개정하였고 설명하고 있으며 WTO 가입 즉시 반덤핑, 상계 및 세이프가드 조치를 적용할 것임을 약속했다. 또한 러시아 연방 주관 당국 또는 관세同盟 주관 기구는 GATT 제6조, SCM 협정 및 세이프가드 협정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보조금<sup>84)</sup>과 관련하여 회원국들이 러시아 정부의 국내 산업(석탄, 은행, 농업, 자동차, 민간 항공기, 소비재 및 섬유 등) 보조금 지원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자 러시아는 WTO 가입 시점부터 모든 금지 보조금

80) Ibid, at 18 : Enterprises that are State-Owned or -Controlled, Enterprises with Special or Exclusive Privileges

81) Ibid, at 26 : Pricing Policies

82) Ibid, at 407 : Table 7 - List of Goods and Services for Internal Consumption for which Prices are Regulated by the Governm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and Federal Executive Bodies. Table 8 - List of Goods and Services for Internal Consumption for which Prices are Regulated by the Sub-Federal Executive Bodies. Table 9 - List of Services for Internal Consumption for which the Sub-Federal Executive Bodies have the Right to Introduce Regional Regulations over Prices (Tariffs) and Mark-ups.

83) Ibid, at 139 : Anti-dumping, countervailing and safeguard measures.

84) Ibid, at 166 : Industrial policy, including subsidy policies.

을 철폐하고 나머지 보조금 프로그램도 SCM 협정에 부합하도록 조정하며 보조금 정책에 관한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임을 약속하였다. 또한 SCM 협정 제27조(개발도상회원국에 대한 특별 및 차등 대우)와 제28조(경과조치-기존계획)를 적용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지재권<sup>85)</sup>과 관련하여 회원국들은 러시아의 TRIPS 협정 이행 가능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이에 러시아는 법률 개정을 통해 TRIPS 협정의 모든 조항을 준수하도록 하고 지재권의 보호와 집행은 모두 강화할 것임을 약속했다. 민법전 제4부의 채택을 통해 러시아 연방 내 지식재산권 분야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특히 인터넷상의 저작권 침해 문제에 대해 민사적 구제책을 강화할 것임을 약속하였다.

#### 4. 비시장경제(NME) 국가의 WTO 가입 사례 비교 및 시사점

중국, 베트남, 러시아의 WTO 가입 협상 과정에서 공동으로 논의된 비시장경제 관련 내용은 크게 보조금, 국영기업, 무역구제 조치, 가격정책, 환율정책, 지재권 등 6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이들 분야는 비시장경제(NME) 국가들의 WTO 가입 과정에

서 핵심적인 쟁점으로 다루어졌으며, 각국의 경제체제 전환과 다자통상체제 질서로의 통합을 반영하는 중요한 지표가 되었다.

첫째, 보조금 관련 협상에서 세 국가는 WTO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보조금을 철폐하고 농업에 대한 보조금을 감소시키기로 약속했다. 또한 SCM 협정을 준수하고 보조금 관력 정책을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합의했다. 단, 각국의 보조금 협상 대상 분야는 다소 차이가 존재한다. 중국은 경제특구에 지급되는 보조금, 국내 철강기업과 첨단기술 제품에 대한 수출 보조금에 대한 협상을 집중적으로 진행하여 관련 금지보조금을 모두 철폐하기로 하였고, 베트남은 섬유 및 의류 산업에 대한 보조금을 즉시 철폐하고 기타 산업은 5년 기한으로 보조금의 점진적 철폐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러시아는 에너지, 농업, 자동차, 민간 항공기 등 국내 산업에 대한 모든 금지보조금을 철폐하기로 약속하고 개발도상국 특별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하였다. 보조금은 글로벌 무역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시장 왜곡을 초래하므로 비시장경제(NME) 국가들의 WTO 가입 협상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쟁점으로 다루어졌다.

둘째, 무역구제 조치와 관련하여 세 국

85) Ibid, at 309 : TRADE-RELATED INTELLECTUAL PROPERTY REGIME(TRIPS).

가는 국내 관련 법률을 WTO 세이프가드 협정, 반덤핑 협정, SCM 협정에 부합하도록 제정 또는 개정하여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무역구제 조치의 시행을 위한 법적, 제도적 체계를 구축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무역구제 조치 관련 조항 중 비시장경제 지위와 관련된 내용은 국가별로 다소 차이를 보였다. 중국은 WTO 가입 후 15년 후인 2016년 이후 비시장경제 분류에 따른 반덤핑 조사가 종료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베트남도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 시 국내 가격이 아닌 제3국의 수출가격 또는 생산가격을 기준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치의 만료일을 WTO 가입 후 12년 후인 2018년 12월 31일로 설정하여 중국과 거의 유사한 비시장경제 지위 조항 협상을 진행하였다. 반면, 러시아는 비시장경제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무역구제 조치 관련 조항은 비시장경제(NME)라는 용어가 명문화되어 있는 조항으로 비시장경제 지위의 판정에 중요한 근거가 되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WTO 회원국에게 무역구제조치는 비시장경제(NME) 국가로부터의 불공정한 수입으로부터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기에 이와 관련된 협상은 매우 중요하게 여겨질 수밖에 없다.

셋째, 국영기업과 관련하여 세 국가는 모두 자국의 국영기업이 시장경제 기반으

로 운영되도록 보장하고 정부의 의사결정 개입을 배제할 것임을 약속하였으며 국영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WTO 규정에 부합하도록 조정하기로 합의했다. 국영기업은 비시장경제(NME) 국가의 경제활동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정부 보조금 수혜 가능성이 높아 글로벌 무역에서 불공정 경쟁과 시장 왜곡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비시장경제(NME) 국가의 가입 협상에서 중요한 분야이다.

넷째, 가격정책과 관련하여 세 국가는 가격이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 결정되도록 보장하되 일부 필수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서는 가격 통제를 유지하고 대신 이를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약속하였다. WTO 가입 이전 중국은 다중 가격제도, 베트남과 러시아는 이중 가격제도를 시행했으나, 세 국가 모두 WTO 가입을 위해 이를 점진적으로 철폐하기로 합의하였다. 비시장경제(NME) 국가의 가격 정책은 반덤핑 및 상계조치 조사 시 정상가격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외국 기업의 시장 접근도 제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에 WTO 가입 협상에서 회원국들의 각별한 주목을 받았다.

다섯째, 환율정책과 관련하여 세 국가는 외환거래의 자유화를 추진하고 IMF 협정 제8조의 의무를 수락하며 경상거래에 대

한 외환 통제를 철폐하기로 약속했다. 중국의 경우 1994년 환율 단일화를 시행하면서 시장 기반의 관리변동환율제도를 도입하고 은행 간 외환시장에서 미 달러에 대한 위안화의 매입 및 매도 환율을 기준 환율의 0.3% 범위 내에서 변동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베트남도 기존의 고정환율제도를 관리변동환율제도로 전환했으며 기존에 시행하던 외환 의무 매각 규제를 철폐하고 점진적인 외환시장 자유화를 약속했다. 러시아의 경우에는 중국, 베트남과 달리 루블화의 변동성을 허용하는 상대적으로 유연한 환율 정책을 도입하고 기존에 시행하던 외환 수익 매각 제도를 협상 기간 중인 2007년에 폐지하였다. WTO 회원국들은 비시장경제(NME) 국가들의 인위적인 환율 조작 가능성에 대해 매우 큰 우려를 가지고 있는데, 환율 조작은 불공정 무역 경쟁과 무역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일종의 수출 보조금으로 간주되어 SCM 협정의 위반 소지가 있기에 환율정책과 관련한 협상도 비시장경제(NME) 국가의 WTO 가입 협상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여섯째, 지적권과 관련하여 세 국가는 모두 TRIPS 협정을 준수하고 이행하기로 약속했다. 지적권 보호 수준을 글로벌 기준에 맞추기 위해 특허법, 저작권법, 상표법 등 법 제도를 개선하고 지적권 집행력

을 향상시켜 실질적인 보호 수준을 높이기로 합의하였다. 지적권의 보호는 공정한 무역과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핵심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기에 비시장경제(NME) 국가들의 WTO 가입 협상 과정에서 기존 WTO 회원국들의 각별한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WTO의 가입 과정은 단순한 무역협정의 체결보다 매우 복잡한 과정으로 비시장경제(NME) 국가들에게 있어 이는 근본적인 경제체제의 변화가 요구되는 도전적인 과제이다. 이러한 과정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의 광범위한 개혁을 요구한다. 첫째, 경제 구조의 전환이다. 시장 메커니즘 도입, 가격 자유화, 국영기업 개혁 등 시장경제 원리에 부합하는 경제 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는 비시장경제(NME) 국가들의 근본적인 경제 운영 방식의 변화를 의미하고 기존의 경제 질서와 이해관계의 재편을 요구한다. 둘째, 법률 체계의 정비이다. WTO 규범에 부합하는 국내법 제정 및 개정이 요구되는데 이는 무역 관련 법규뿐만 아니라 지적권, 서비스 분야 등 광범위한 영역의 법률 체계 개선이 포함된다. 이러한 법률 체계의 정비는 국제무역 규범과 국내 법률 시스템 간의 정합성을 이루는 과정으로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요구된다. 더불어 이러한 개혁 과정은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를 넘어 국내외 정치적, 사회적 영

향도 받기 마련이기에 비시장경제(NME) 국가들의 WTO 가입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다.

#### IV. 다자통상체제 속에서의 비시장 경제(NME) 체제의 구조적 쟁점

##### 1. 비시장경제 지위 관련 쟁점

WTO 다자통상체제 내에서 비시장경제 회원국의 시장경제 지위 인정 여부의 문제가 큰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분류를 넘어 국제무역 질서와 일부 국가들의 무역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문제이기에 수년간 이어지고 있다.

중국 사례가 이러한 쟁점의 대표적인 예시이다. 2001년 WTO 가입 시 중국은 가입 의정서 제15조<sup>86)</sup>에 따라 15년 후인 2016년에 시장경제 지위를 부여받을 것으로 기대

했다. 실제로 호주, 뉴질랜드,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베네수엘라 등 80개 이상의 국가들이 중국의 시장경제 지위를 인정해 주었다.<sup>87)</sup> 한국도 2005년에 중국의 시장경제 지위를 공식 인정하였다.<sup>88)</sup> 그러나 미국과 EU는 여전히 중국의 시장경제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들은 중국 경제에서 국영기업의 높은 비중, 과도한 산업 보조금, 지속적인 대중 반덤핑 제소 건수 증가 등을 근거로 들고 있다. 이로 인해 중국은 2016년 12월 12일 미국과 EU를 WTO에 제소<sup>89)</sup> 했으나 2019년에 소송 중단 의사를 밝히고<sup>90)</sup> 현재까지 비시장경제 대우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베트남의 경우도 중국과 유사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 베트남은 WTO 가입 작업반 보고서에서 2018년 12월 31일에 비시장경제 지위 조항이 만료<sup>91)</sup>되는 것으로 협상이 이루어졌다. 기록상 영국, 캐나다, 호주, 일

86) Access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WT/L/432, at 9 : ...the non-market economy provisions of subparagraph (a) shall no longer apply to that industry or sector.

87) Kaszubska, Katarzyna. "Rethinking China, s non-market economy status beyond 2016." Observer Research Foundation Occasional Paper 107, 2017, 6.  
Hinrich Foundation, "Is China a "market economy"?", 2016. 12. 15.  
<<https://www.hinrichfoundation.com/research/tradevistas/wto/china-market-economy/>>

88) YTN, "한중 정상회담, '시장경제지위 인정'", 2005.11.16.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0099059?sid=115>>

89) WTO, "China files WTO complaint against US, EU over price comparison methodologies", 2016. 12. 12.  
<[https://www.wto.org/english/news\\_e/news16\\_e/ds515\\_516rfc\\_12dec16\\_e.htm](https://www.wto.org/english/news_e/news16_e/ds515_516rfc_12dec16_e.htm)>

90) 한국무역협회, "중국, EU와의 시장경제지위 관련 WTO 분쟁 심리중단 요청", 2019. 06. 19.  
<<https://www.kita.net/board/tradeNews/euTradeNewsDetail.do?no=1788941>>

91) Report of the Working Party on the Accession of Viet Nam, WT/ACC/VNM/48. para. 255.

본, 한국 등 72개 국가는 베트남의 시장경제 지위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sup>92)</sup> 그러나 2023년 9월 베트남은 천연꿀에 대한 반덤핑 연례재심(A-552-833)에서 미국에 비시장경제 지위의 재검토를 공식적으로 요청<sup>93)</sup>했으나, 미국은 2024년 8월 3일 베트남의 무역 지위를 비시장경제(NME)로 유지하고 베트남산 수입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의 적용도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다.<sup>94)</sup> 이는 베트남 경제의 급속한 성장과 많은 외국인 투자 유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시장 경제적 요소가 존재한다는 판단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도 결국 중국과 마찬가지로 현재까지 여전히 미국과 EU로부터 비시장경제 대우를 받고 있다.

러시아의 경우 미국으로부터 2006년 시장경제 국가 지위를 부여받았으나, 2022년 미국은 러시아를 더 이상 시장경제 국가로 대우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면서<sup>95)</sup> 다시 비시장경제 대우를 받게 되었다. 이는 경제적 요인뿐만 아니라

정치적, 지정학적 요인도 시장경제 지위 인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비시장경제 지위의 처리 문제는 국제무역 관계, 정치적 고려, 그리고 개별 국가의 이해관계 등 요소들이 복잡하게 얽힌 문제이기에 앞으로도 WTO 다자통상체제에서의 주요 쟁점으로 남을 것으로 예상된다.

## 2. 반덤핑 관련 쟁점

반덤핑 관련 쟁점은 WTO 다자통상체제에서 비시장경제 지위의 처리 문제와 더불어 가장 중요한 구조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비시장경제(NME) 국가들에 대한 반덤핑 조사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주목받고 있으며, 이는 불공정 무역행위의 처리 문제와 직결된다. 불공정 무역행위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덤핑이다.

덤핑은 국제무역에서 국내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하거나, 생산 비용보다

92) East-West Center, "US Review of the Non-Market Economy Status of Vietnam", 2023. 11. 27.

<<https://asiamattersforamerica.org/articles/us-review-of-the-non-market-economy-status-of-vietnam>>

93) 법무법인(유) 세종, "미국의 반덤핑조사 관련 베트남에 대한 비시장경제 지위 재검토", 2024. 01. 25.

<<https://www.shinkim.com/kor/media/newsletter/2322>>

94) 연합뉴스, "美, 베트남 무역지위 '비시장경제'로 유지...베트남 "실망"", 2024. 08. 03.

<<https://www.yna.co.kr/view/AKR20240803042600076?input=1195m>>

95) 중국전문가포럼(CSF), "미국, 러시아를 시장 경제 지위에서 강등", 2022. 11. 16.

<<https://csf.kiep.go.kr/aif/newsBriefDetail.es?brdctNo=338445&mid=a30100000000&systemcode=04>>

낮은 가격으로 수출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덤핑의 주요 동기는 국내 과잉생산 상품의 처분, 조업도 유지, 국내 가격 유지, 특정 시장 확보 및 개척, 자국 시장에 대한 제3자의 경쟁 배제, 타인의 시장 탈취, 자국 시장의 덤핑 공격에 대한 보복, 독점이윤 확보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sup>96)</sup> WTO는 GATT 제6조와 반덤핑 협정<sup>97)</sup>을 통해 수입국이 수출국가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덤핑으로 인한 불공정 무역 행위를 방지하고 국가 간 무역 환경의 공정성을 유지하고자 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문제점은 반덤핑 관정이 확정되어 반덤핑 조사가 진행될 경우 시장경제 국가와 비시장경제(NME) 국가에 대한 수출 상품의 가격 산정 방식이 다르다는 것이다. 시장경제 국가들은 수출 상품의 정상가격을 자국 내 가격으로 판단할 수 있지만 비시장경제로 분류된 국가들은 정상가격 산정 시 자국 국내의 가격을 인정받지 못하고 제3국의 수출가격 또는 구성가격(constructed value)<sup>98)</sup>으로 대체하

기 때문에 더 높은 반덤핑 관세율이 부과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반덤핑 조사 과정에서 비시장경제(NME) 국가가 시장경제 국가보다 더 엄격한 요구를 적용받는 비대칭적인 조치는 공정한 가격 비교의 어려움과 과도한 제재 적용 가능성을 초래하며 비시장경제(NME) 국가들이 불리한 대우를 받게 될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다.

WTO 무역구제 포털사이트<sup>99)</sup>의 통계에 따르면 1995년 1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중국을 대상으로 1,694건, 베트남 133건, 러시아 205건의 반덤핑 조사가 진행되었다. 실제로 상당히 많은 반덤핑 조사가 이뤄지고 있으며, 비시장경제(NME) 국가에 대한 제3국 가격인정 제도는 해당 국가의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비시장경제(NME) 국가에 진출해 있는 외국투자기업에도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다. 베트남 현지 자료에 따르면 한국계 투자 기업이 미국의 반덤핑 조사 과정에서 베트남 내 시장가격이 정상가격으로 인정받지 못해 과도한 반덤핑 상계의 처분을

96) 기획재정부 시사·경제용어사전. <<https://www.moef.go.kr/sisa/dictionary/detail?idx=908>>

97) 반덤핑 협정 제2.1조(Agreement on Implementation of Article VI of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1994, Article 2. Determination of Dumping)에서는 “한 국가로부터 다른 국가로 수출된 상품의 수출 가격이 수출국내에서 소비되는 동종 상품에 대한 정상적 거래에서 비교 가능한 가격보다 낮을 경우 동 상품은 덤핑된 것, 즉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다른 나라의 상거래에 도입된 것으로 간주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98) 반덤핑 조사 과정에서 국내 정상가격(Normal Value)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수출자가 제출한 정보를 사용하여 조사당국이 계산한 가격을 말한다. 생산원가, 일반·관리·판매비 및 적절한 이윤으로 구성된다.

99) Trade Remedies Data Portal. <<https://trade-remedies.wto.org/en>>

받아 장기간에 걸쳐 미국 시장으로의 수출 활동에 중대한 제약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100)</sup>

이에 따라 비시장경제(NME) 국가들은 시장경제 지위의 획득을 통해 반덤핑 조사 과정에서 시장경제 국가들과 동등한 자국 내 가격 산정의 조사 기준을 적용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는 앞서 언급한 비시장경제 지위의 처리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된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다. 결론적으로 반덤핑 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시장경제(NME) 국가와 관련된 구조적 문제는 WTO 내의 분쟁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자유무역 질서에 대한 신뢰도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에 조속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 3. 보조금 관련 쟁점

반덤핑 문제 못지않게 비시장경제(NME)

국가의 보조금 문제도 매우 큰 쟁점이다. 대부분의 시장경제 국가들은 국영기업과 국영은행으로 운영되는 비시장경제(NME) 국가의 경제체제를 보편적으로 보조금 체제로 인식하며 이들 국가 정부가 자국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가격을 왜곡시키고 국제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부당하게 강화한다고 비판한다.

WTO는 GATT 제6조, 제16조 및 SCM 협정<sup>101)</sup>을 통해 각국의 보조금 사용을 규제하여 국가 간의 공정한 무역과 경쟁을 보장하고자 한다. 시장경제 국가들은 흔히 SCM 협정 제1.1(a)(1)(iv)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위 “위임 및 지시”<sup>102)</sup>에 의한 보조금 교부 조항을 근거로 비시장경제(NME) 국가의 정부가 국영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했다고 판정하고 해당 국가에 상계관세를 부과하고 있다.<sup>103)</sup> WTO 무역구제 포털 사이트의 통계에 따르면 1995년 1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상계관세 조사가 가

100) 법률신문, “반덤핑 조사와 베트남의 시장경제지위”, 2017. 11. 09.

<<https://www.lawtimes.co.kr/LawFirm-NewsLetter/122635>>

101) 보조금을 금지보조금(Prohibited Subsidies), 조치가능보조금(Actionable Subsidies), 허용보조금(Non-Actionable Subsidies)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에 따라 다르게 대응한다. 금지 보조금에 대해 엄격히 금지하고 발견 시 즉각 철회하도록 요구하고 제한 보조금에 대해 조사를 통해 피해가 입증되면 보조금 지급을 철회하거나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조치하고 허용보조금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문제를 삼지 않고 허용한다.

102) 이 조항의 협정 원문은 다음과 같다.

a government makes payments to a funding mechanism, or entrusts or directs a private body to carry out one or more of the type of functions illustrated in (i) to (iii) above which would normally be vested in the government and the practice, in no real sense, differs from practices normally followed by governments.

103) 수출국이 보조금을 지급하여 수출된 품목의 수출로 인해 수입국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장 많이 진행된 국가는 중국이며, 총 224건으로 전체 조사 건수(733건)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대중국 상계관세 제소를 가장 많이 진행한 국가는 미국이며, 미국이 중국에 부과한 상계관세는 대부분 100%를 상회하고 가장 높게는 616%에 달하는데, 이는 미국이 다른 국가에 대하여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매우 드문 것으로 드러난다.<sup>104)</sup>

이 과정에서의 구조적 문제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보조금 판단 기준의 문제다. 시장경제 국가에서는 특정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무조건 보조금으로 간주하지만, 비시장경제(NME) 국가에서는 특정 기업이나 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나 개입을 자국 경제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여긴다. 둘째, 보조금 판단기준의 적용 범위에 관한 논란이다. 시장경제 국가들은 SCM 협정의 보조금 판단기준을 모든 회원국에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비시장경제(NME) 국가들은 SCM 협정이 시장경제 기반으로 제정되어 비시장경제(NME) 국가들에게 구조적으로 불리하게 적용된다고 반박한다. 셋째, 이

중 구제(double remedy) 문제이다. 동일한 수입품에 대해 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를 동시에 부과하여 보조금의 효과를 이중으로 구제하는 사례가 발생하는데 이는 비시장경제(NME) 국가들에게 더욱 빈번하게 적용되는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 4. 환율 관련 쟁점

마지막으로 환율 관련 쟁점이다. 비시장경제(NME) 국가들의 외환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이 상당하다는 인식에 기반하여 일부 국가에서는 비시장경제(NME) 국가의 환율이 정부의 개입으로 조작되었다고 여기며 이를 부당한 보조금 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미국의 사례는 이러한 쟁점을 잘 보여준다. 2019년 8월 미국은 1988년 종합무역법과 2015년 무역촉진법을 법적 근거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고 저평가된 위안화를 무역 보조금으로 간주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2020년 1월 미-중 1단계 무역 합의를 통해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을 해제하고 관찰 대상국<sup>105)</sup>으로 조정

우려가 있거나 또는 국내산업의 확립이 실질적으로 지연되었음이 조사를 통해 확인될 경우, 수입 당국이 해당 품목에 대해 보조금 범위 내에서 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y)를 부과하여 보조금에 의한 피해로부터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조치.

104) 안덕근·유지영·김민정, “대중국 상계조치상의 보조금 분석과 통상법 쟁점 연구.” 통상법을 제123호, 30면, 2015 참고. 유사한 보조금 문제에 대해 유럽연합, 호주, 캐나다의 경우 대부분 20~50%의 상계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었다.

환율 문제가 재차 조명된 것은 2020년 트럼프 행정부가 베트남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고 베트남에 환율조작 문제로 환율 상계관세 부과 예비 판정을 내리고 나서부터다. 미국 상무부는 2020년 11월 베트남 환율 저평가를 근거로 베트남 기업에 대해 6.23~10.08%의 상계관세율을 산정하여 예비판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미국이 환율 저평가국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발표한 후 외국의 통화 저평가를 상계관세 부과 가능한 보조금으로 인정한 첫 사례였다.

이러한 조치는 비시장경제 문제가 단순히 무역구제 차원의 국내 가격 인정 여부를 넘어 환율 문제까지 초래하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미국의 통상조치가 WTO 규범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이러한 조치가 다자통상체제의 정합성을 해치고 있다는 관점도 나오고 있다.<sup>106)</sup>

## V. 결론

비시장경제(NME) 국가들의 WTO 체제의 대거 편입은 다자통상체제의 지속가능성과 공정성 유지에 중요한 도전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비시장경제(NME) 국가의 경제체제 개혁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유도할 것인가에 대한 과제와 함께, 이들의 가입으로 인해 수반되는 리스크를 어떤 방식으로 관리하여 다자통상체제를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복잡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비시장 경제적 요소로 인한 무역왜곡 방지, 국영기업과 보조금 관련 규범 정비, 그리고 이와 관련된 분쟁에 공정하게 대응할 수 있는 분쟁해결기구의 기능회복과 개선이 시급히 요구된다. 이러한 조치들이 아직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비시장경제 관련 구조적 쟁점들이 해결되지 않은 점은 WTO가 현재 직면한 심각한 위기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자통상체제의 위기는 기술적 문제뿐만 아니라 신뢰의 문제에서도 기인하고 있다. 특히 중국과 미국 간의 근본적인 시각 차이가 WTO 체제 내에서의 신뢰 구축을

105) 관찰대상국 판단 기준은 지난 1년간 200억 달러 초과한 현저한 대미 무역 흑자, GDP의 2%를 초과하는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 12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외환을 순매수하는 지속적·일방적인 외환시장 개입 등 3가지다. 3가지 중 2가지를 충족하거나 대미 무역흑자 규모 및 비중이 과다하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된다. 2024년 상반기 미국 ‘주요 교역상대국 환율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미국 재무부가 공식적으로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국가가 없는 상황이다.

106) 이효영, “세계무역기구(WTO) 개혁을 위한 규범 개선 방향과 한국의 역할”, 통상 제103호, 9면, 2020.

어렵게 만들고 있다. 중국은 자국 내 국내외 기업들의 치열한 시장 경쟁을 강조하며 체제의 차이만으로 중국 경제를 비시장경제로 분류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한다. 중국은 WTO 체제의 본질은 시장 경쟁을 통한 경제 활성화이지 특정 국가의 체제 변화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는 관점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미국 입장은 중국이 국영기업과 국영은행에 의해 운영되는 국가라는 점을 강조하며, 특히 모든 국영기업 및 은행의 경영진에 공산당원이 포함된 체제에서 국가의 개입이 필연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인식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형태의 국가 개입이 궁극적으로 시장 경쟁을 저해한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세계 최대 경제 강국인 미국과 중국이 근본적으로 상반된 시각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신뢰가 훼손된 상황에서 WTO 체제가 다자통

상체제를 이끌어가는 데 상당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실적으로 이미 많은 비시장경제(NME) 국가들이 WTO 체제에 편입된 상황에서 이들을 포용하지 않고는 지속적인 발전을 기대하기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WTO 다자통상체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회원국 간의 신뢰 구축과 회복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 다음으로는 비시장경제 국가들의 상황과 체제를 충분히 포용하고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룰(무역 규범)을 마련하여, 비시장경제 이슈로 인해 야기된 구조적 문제들을 조속히 개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의 진화 과정에서 WTO가 직면한 중요한 도전이며 향후 다자통상체제의 발전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1. 국내문헌

안덕근, “WTO 체제 거버넌스의 구조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분석.” 통상법률 제97호, 2011.

고지현·노영예·양지영, WTO 상소기능 정지에 따른 MPIA 의 주요내용 및 합의, 관세 연구23-03, 2024.

김기홍·박용석, 중국의 GATT 가입과 우리의 대응방향, 산업연구원, 1993.

대한무역진흥공사, 동구시장 : 유고슬라비아, 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 헝가리, 루마니아, 1971.

이충묵, “체제이행의 정치 : 헝가리의 사례연구.” 국제지역연구 제9호, 2000.

안덕근·유지영·김민정, “대중국 상계조치상의 보조금 분석과 통상법 쟁점 연구.” 통상 법률 제123호, 2015.

이효영, “세계무역기구(WTO) 개혁을 위한 규범 개선 방향과 한국의 역할”, 통상 제103호, 2020.

### 2. 외국문헌

Irwin, Douglas, Petros Mavroidis, and Alan O. Sykes. “The Genesis of the GATT”,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8

Grzybowski, Kazimierz. “Socialist Countries in GATT.” The American Journal of Comparative Law, 28.4, 1980.

Jones, Kent. “Cuba, Trade Dependency and the GATT/WTO System.” International Advances in Economic Research 24.4, 2018.

Jones, Kent. “Revolutionary Cuba and the GATT/WTO system.” Journal of World Trade

51.5, 2017.

Zhang, Bin. *The Evolution of the Non-market Economy Treatment in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Springer Singapore, 2018.

Williams, Peter John. *A Handbook on Accession to the WTO*. With a foreword by Arif Hussai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8.

Kaszubska, Katarzyna. "Rethinking China, s non-market economy status beyond 2016." *Observer Research Foundation Occasional Paper 107*, 2017.

International Monetary Fund, *Membership and Nonmembership in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1985.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Annual Report*, 2024.

World Trade Organization, *Status of WTO Legal Instruments*, 2021.

Protocol for the accession of Yugoslavia, L/268, 1 August 1966.

Report of the Working Party : Relations with the Federal People's Republic of Yugoslavia, GATT L/986, 16 May 1959.

Accession of Poland, L/2851, 19 September 1976.

Accession of Romania, L/3601, 21 October 1971.

Accession of Hungary, L/3908, 14 August 1973.

Access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WT/L/432, 23 November 2001.

Report of the working party on the accession of China, WT/ACC/CHN/49, 1 October 2001.

Accession of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 Nam, WT/L/662, 15 November 2006.

Report of the Working Party on the Accession of Viet Nam, WT/ACC/VNM/48, 27

October 2006.

Accession of The Russian Federation, WT/L/839, 17 December 2011.

Report of the Working Party on the Accession of The Russian Federation, WT/ACC/RUS/70,  
17 November 2011.

石广生, <中国加入世界贸易组织知识读本4: 中国加入世界贸易组织谈判历程>, 人民出版社,  
2011.

### 3. 기타문헌

안덕근·김민정, “중국 환율정책에 대한 법적 대응조치와 WTO 합치성 분석.” 통상법률  
제106호, 2012.

류예리, “중국 WTO 가입의정서의 효력종료에 관한 연구: 비시장경제지위 규정을 중심  
으로: 비시장경제지위 규정을 중심으로.” 통상법률 제130호, 2016.

김경화, “WTO 반덤핑협정 상 비시장경제 규율에 대한 고찰: 미국의 단일률 적용 관행  
을 중심으로”, 무역학회지 제46권 제4호, 2021.

정영식·한형민·이선형 등, “미국의 베트남 환율조작국 지정과 영향.” 오늘의 세계경제,  
2020.

최장호·최유정, “체제전환국의 WTO 가입경험과 북한 경제.” [KIEP] 연구자료, 2018.

Martin, Will, and Elena Ianchovichina. “Implications of China’s Accession to the World  
Trade Organisation for China and the WTO.” *The World Economy* 24.9 (2001).

Polouektov, Alexander. “The non-market economy issue in international trade in the context  
of WTO accession.”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2002.

Qin, Julia Ya. “WTO-plus obligations and their implications for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legal system.” *J. World Trade* 37, 2003.

- Qin, Julia Ya. “WTO regulation of subsidies to state-owned enterprises (SOEs)-A critical appraisal of the China accession protocol.”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7.4, 2004.
- Davis, Christina L., and Meredith Wilf. “Joining the Club : Accession to the GATT/WTO.” *The Journal of Politics* 79.3, 2017.
- Hošman, M. T. “China’s NME status at the WTO : analysis of the debate.”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Law and Policy* 20.1, 2021.
- Nedumpara, James, and Zhou Weihuan. *Non-Market Economies in the Global Trading System*. Springer, 2018.
- Gao, H., and Zhou, W. *Between Market Economy and State Capitalism : China’s State-Owned Enterprises and the World Trading System*.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22.
-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WTO Accessions and Development Policies*. United Nations, 2001.

[국문초록]

## 주요 비시장경제 국가(NME)의 GATT/WTO 가입 사례와 다자통상체제의 한계 및 시사점

왕일 · 이효영

중국과 미국 간의 통상갈등은 WTO 다자통상체제의 안정성을 약화시키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며, 이들 갈등의 근저에는 비시장경제(NME) 국가의 WTO 수용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WTO 출범 이후 비시장경제(NME) 국가의 대규모 가입은 다자통상체제의 정당성과 포괄성을 강화하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으나, 동시에 시장경제 원칙과의 충돌을 야기하여 체제의 불안정을 초래하였다. 본 연구는 주요 비시장경제(NME) 국가들의 GATT/WTO 가입 사례를 통해 보조금, 국영기업, 무역구제 조치(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가격정책, 환율정책, 지적권 등 핵심 협상 의제들을 체계적으로 비교 분석하고 다자통상체제에서의 비시장경제(NME) 국가 통합이 초래한 구조적 쟁점을 비시장경제 지위 관련 쟁점, 반덤핑 관련 쟁점, 보조금 관련 쟁점, 환율 관련 쟁점 측면에서 이들 국가들이 직면한 현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이를 통해 다자통상체제가 갖는 한계와 도전 과제를 규명하고 다자통상체제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향후 과제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한다.

**주제어:** 비시장경제(NME), 다자통상체제, WTO 가입, 반덤핑, 보조금, 환율.

[Abstract]

## Limitations and Implications for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Insights from GATT/WTO Accession Cases of Major Non-Market Economies(NMEs)

Yi Wang · Hyo-young Lee

The trade conflicts between China and the United States represent a critical factor undermining the stability of the WTO multilateral trading system, with the issue of accepting non-market economy (NME) countries into the WTO lying at the core of these conflicts. While the large-scale accession of NME countries after the launch of the WTO brought positive effects in strengthening the legitimacy and inclusiveness of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it also caused systemic instability by clashing with market economy principles. This paper systematically compares and analyzes key negotiation issues, including Subsidies, State-owned Enterprises, Trade Remedy Measures(Anti-dumping, Countervailing Duties, Safeguards), Pricing Policies, Foreign Exchange Policies, and Trade-related Intellectual Property Regime, by examining the GATT/WTO accession cases of major NME countries. It offers a comprehensive review of the structural issues arising from the integration of NME countries into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with a particular focus on non-market economy status, anti-dumping measures, subsidies, and exchange rate policies. Additionally, it assesses the current challenges faced by these countries within this framework. Through this analysis, this paper seeks to identify the limitations and structural challenges of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and, based on these findings, propose future tasks and policy alternatives to enhance the sustainability of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Keyword:** Non-market economy, Multilateral Trading system, WTO Accession, Anti-dumping, Subsidies, Exchange rate.